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1회 이사회

2008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근무평정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회원 제명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조정(안) 승인의 건, 2008년도 1~2월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조정 승인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회비 수납방식 개선에 관한 건, 정회원회비 조정에 관한 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에 관한 건, '건축사'의 한자표기 변경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근무평정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원 제명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조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08년도 1~2월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조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사항

- 제1호 :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의 제목과 순서를 일부 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3호의안 : 2007년도 결산의 건

△제4호의안 : 건축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건

△제5호의안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 추진의 건

△제6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제2호 : 회비 수납방식 개선에 관한 건
-오늘 제안된 회비 수납방식에 대하여 이사들 각자가 장단점을 분석·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정회원회비 조정에 관한 건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함.
- 제4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에 관한 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협회의 건의(안)를 제출키로 하고, 건의내용은 이사 5인이 작성·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사'의 한자표기 변경에 관한 건
-이사들 각자가 좀 더 조사·연구한 후 중장기 개선과제에 포함할 지의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 제1회 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

제1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건, 회비 수납방식 개선에 관한 건, 정회원회비 조정에 관한 건,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 총회 일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건
-건축단체통합에 관한 기본 합의 사항을 추인하고, 통합의 방법, 시기, 명칭 등에 대해서는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회비 수납방식 개선에 관한 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회비 수납방식을 개선하자는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안이 작성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정회원회비 조정에 관한 건
-정회원 회비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도 정회원회비를 인상 조정(2만원→3만원)하기로 함.
- 제4호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에 관한 건
-연구원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42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5호 :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시.도건축사회 총회 일정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 총회일정을 아래와 같이 협의 · 조정함.

△2월29일(금)-광주건축사회

△3월3일(월)-제주건축사회

△3월4일(화)-대전건축사회

△3월7일(금)-전북건축사회

△3월13일(목)-경기건축사회

△3월14일(금)-경북건축사회

△3월17일(월)-충남건축사회

△3월18일(화)-서울건축사회

△3월19일(수)-대구건축사회

△3월20일(목)-인천건축사회

△3월21일(금)-전남건축사회

△3월24일(월)-충북건축사회

△3월25일(화)-울산건축사회

△3월26일(수)-부산건축사회

△3월27일(목)-경남건축사회

△3월28일(금)-강원건축사회

-회장과의 대화 및 주요현안 설명회 시간을 각 30분씩 배정기로 함.

■ 2008년도 제2회 시·도건축사회장회의

2008년도 제2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2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

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 의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제8조(입회) : 연수교육 이수후 입회 → 일정기한 내에 입회교육 이수
-부칙 : 필요시, 건축사회 임원의 임기조정(1년 또는 3년)
- 제2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하고, 재경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기로 함.
- 제3호 : 제42회 정기총회 의제에 관한 건
-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제에 대해 동의함.
- 제4호 : 제42회 정기총회 의제에 관한 건
-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제에 대해 동의함.

■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 회의가 지난 1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건과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건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42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관개정(안)을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긴급 수도권 임원회의

긴급 수도권 임원 회의가 지난 2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례문 소실에 대한 대응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소실된 송례문에 대하여 온 국민과 함께 슬픔을 함께한다.
- 송례문 소실이후의 대책보다는 우선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발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성명서는 가능하면 오늘이내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각 언론계에 Fax나 Mail로 전달하도록 한다.
- 성명서 내용이 뉴스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KBS는 백 민석 이사가 아나운서실과 보도본부장과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고, MBC는 박 찬정 이사가 후배인 MBC 기획이사를 통하여 사회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 성명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표로 “건축유산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송례문 복원을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
-목조 문화재 수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KBS 등의 공중파 방송과 연대하여 본 행사를 공동개최하도록 추진
- 이번 행사가 “독도 집짓기 운동”과 같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

■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장학사업 계획 결정에 관한 건, 장학기금 확충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장학사업 계획 결정에 관한 건
-장학생 선발인원 및 추천방법 등
- 제2호 : 장학기금 확충방안에 관한 건

-장학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금모금 방법과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강구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법제위원회 업무추진사업 현황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건축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이천 냉동창고 화재 관련 설계·감리에 관한 건, 설계·감리 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법제위원회 업무추진사업 현황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회의결과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회의록, 검토내용 첨부)하여 차기 회의 시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협회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협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이천 냉동창고 화재 관련 설계·감리에 관한 건
-사용승인 이후에도 국가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사용승인 이후 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제4호 : 설계·감리 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
-일부내용(분쟁조정기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5호 : 기타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무료설계에 관한 건

-측량에 관한 건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관련 회의에 관한 건

■ 제1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제1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회의가 지난 1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건,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개정관련 고시·보급에 관한 건,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관한 건, 설계대가 연구용역에 관한 건, 이천화재 관련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건
-공사비규모(20~3,000억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리원 일인당 월관리비용을 700만원 기준으로 하여 요율을 산정한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함.
- 제2호 :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개정관련 고시·보급에 관한 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함.
-협회에서 일반인 및 회원에게 보급되는 계약서(설계, 공사감리, 공사)를 작성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을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관한 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감리제도개선 연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문으로 질의하기로 함.
- 제4호 : 설계대가 연구용역에 관한 건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정의 문제점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건축물의 설계대가와 엔지니어링대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분리발주되어야 하

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5호 : 이천화재 관련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감리제도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제도가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제6호 : 건축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건

-최종보고회시 연구목적과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제1회 회관지분소위원회

제1회 회관지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건축사회 회관지분 재산권 정리 요청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서울건축사회 회관지분 재산권 정리 요청에 관한 건
-회관지분에 대한 아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서울건축사회에서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프레젠테이션 운영위원회

제1회 프레젠테이션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발간방향에 관한 건,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발행부수 증부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발간방향에 관한 건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의 예산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등의 방안은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신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근직 건축사 기자가 필요함.

-편집국장 및 편집위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각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기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프레젠테이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발행부수 증부에 관한 건

-협회 및 건축사 등의 홍보를 위하여 국회 의원 및 정부부처 장·차관 등에 건축사지와 신문을 증부해서라도 배부하기로 함.

△건축사지는 500부, 신문은 1,000부를 증부

-증부에 따른 제작비 및 발송비 등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경위에 건의하기로 함.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일반회계는 총액 변경없이 과목별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고, 기타 9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되,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검토하여 재경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미제출된 '건축자재전시사업회계 예산안' 제외)

• 제2호 :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보완토록 함

• 제3호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원 설립·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건

-별도의 재단법인인 『건축·도시·환경 디자인 연구원』 설립·운영자금을 '0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함.

■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2호 : 2007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수지결산(안)을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제3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해 논의함

• 제4호 :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보완토록 함

■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공공성을 증시하는 민간시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회원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협회의 행정처분권한이 가능해야 협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

-엄격한 건축사 윤리규정 필요

-향후 소속기관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집단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설계도서 인증제도 - 설계도서를 원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인증해주는 제도 검토

-회원 명패 제작에 관한 건을 이사회 협의안건으로 상정

-사협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회원 운영제도 필요

• 제2호 :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건축시장 만들기 - 새로운 건축사업 발굴 절실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제3호 : (가칭) '건축설계분야의 자격기준'에 관한 건

-건축사사무소 직원이 건설기술연구원의 교육을 받아야 특급을 주는 것은 부당
-건축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제4호 : 공공성을 증시하는 민간시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건

-미국의 경우, 건축사는 안정, 건강, 복리에 관한 교육을 8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제1회 교류협력위원회

제1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회의일정 및 개최지 확정에 관한 건, 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회의일정 및 개최지 확정에 관한 건

-2008년 회의일정은 매월 3째주 금요일 16:00로 하기로 함.

△지방회의는 3월(대전), 6월(강원), 9월

- (경남 진주)에서 개최
- 제2호 : 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교류협력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단위별로 담당위원을 지정하여 추진기로 함.
 - 각 단위별 사업의 세부계획은 담당위원이 수립기로 함.
 - 본 협회 홈페이지 위원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전위원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상호의견 개진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교류협력위원회의 부족인원 보충(1인)과 광주(전라도), 제주 지역의 위원 추천을 건의하기로 함.

■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사무 추진일정에 관한 건, 선거사무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일정에 관한 건
 - 2008년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 추진은 원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함.
- 제2호 : 선거사무에 관한 건
 - 선거사무의 세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 선거공고는 2008. 1.25(금)에 본 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후보자 등록은 2008. 1.25~1.31(토·일요일 제외) 기간 동안 등록받기로 하고, 선거인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음.
 - 선거홍보물 인쇄사양에 대해서는 용지사양에 대한 제한없이 A4용지 1매(양면)에 흑백 또는 원색으로 인쇄하고, 사진사양은 제한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게재

- 후보예탁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선거종료후 비용정산 반환
- 선거홍보에 있어 예년과 같이 개별 선거공보, 정기간행물 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인터넷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홍보는 허용
- 기타사항
 - 감사선거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개최수를 축소(위원장 확인으로 대체)하고, 대의원에게 발송하는 선거홍보물을 '건축문화신문' 게재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사무 추진일정에 관한 건, 선거사무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에 관한 건
 - 선거사무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 △후보자 피선거권 자격심사 : 이상없음
 - △후보자 등록서류 검수 : 이상없음
 - △선거홍보인쇄물 제작 : 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물 500부를 제출받아 선거인에게 발송기로 함. 다만, 선거비용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총회유인물 발송시 동봉하여 발송토록 함.
 - △투표용지는 원안과 같이 제작토록 함.
 - △감사후보자 공고는 2008. 2. 5일 본 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안과 같이 공고하기로 함.
 - △공정선거 및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예년과 같이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함.

■ 제4회 정관개정특별 실무위원회

제4회 정관개정특별 실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기본방향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기본방향에 관한 건
 - AIA정관을 기본틀로 하여 혁신정관을 제정기로 하고, 각 조항별로 축소심의함.
 - AIA정관 이외에 관련 규정을 구할 경우 번역을 의뢰하기로 함.
 - AIA정관을 4단(협회정관, AIA정관, 혁신정관, 비고)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협회정관은 AIA 정관과 비슷한 내용별로 나열하기로 함.

■ 제4회 재정위원회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2호 : 2007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수지결산(안)을 원안에 동의함.
- 제3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해 논의함
- 제4호 :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건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보완토록 함.